

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

의안 번호	10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05.
09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롯데건설주식회사에서 다대동 일원의 노인정 등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우리구에 기부채납함에 따라
- 지방자치법 제39조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취득대상 재산현황

구분	소재지	지목	면적(m ²)	재산가액(천원)	기부채납사유
토지	다대동 933-8	대지	1,720.5	1,462,425	다대동 일원 노인정 등 공공시설건립 부지 제공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9조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
-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

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

,천원)

재산의 표시				재산가액 (공시지 가)	취득 시기	취득사유	현소유자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	비 고
구분	소재지	지목	면 적						
토지	다대동 933-8	대지	1,720 .5	1,462,4 25	2008.5 월	다대동 일원의 노인정 등 공공시설 건립	롯데건설 주식회사	당리동 317-16 사하구청장	

위 치 도



